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57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5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함.

3. 개정골자

○ 점용허가기간 중에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(안 제7조 제1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안은 1996. 6. 10 조례 제1479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1회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의 제7조제1항의 관리기관 위주의 수익조항을 점 · 사용자의 권익보호로 현실과 부합되게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